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안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련분야 종사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신 설) <p>제4조(위원의임기)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제3조(구성)①~③(생략)</p> <p>④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해외여행 등으로 6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p>제4조(위원의 임기)----- ---(삭 제)</p>